

『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원의 기능(안 제3조)
- 수강자격을 구미시민 우선(안 제4조)
-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평생교육원 시설사용 허가, 이용범위, 사용제한(안 제6조 내지 제8조)
-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 위반시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(안 제9조)
- 시설사용료 징수, 반환 및 감면(안 제10조 내지 제12조)
-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(안 제13조 내지 제16조)
 - 구 성 :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
 - 기 능 : 심의기능
 - 평생교육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
 -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모집 선발에 관한 사항
 - 기타 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 - 임 기 :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-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시 위탁운영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「평생교육법」
- 「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. 7. 1 전부 개정되면서 「시민 복지회관」이 「평생교육원」으로 개편됨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평생교육원 기능은 평생교육 기본계획수립, 프로그램개발 운영, 관련단체 및 시설과의 연계, 정보수집 제공 등을 수행하고
-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범위 및 사용제한, 사용허가 취소 및 감면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또한 평생교육원 운영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, 위원회 기능은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하고
- 평생교육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,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「별표1」과 같이
 - 대강당은 기본시설 60,000원 부대시설 40,000원
 - 회의실과 강의실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각각 30,000원을 1회 4시간 이내 기준으로 기본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음

○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

- 조례안을 제정 또는 전면 개정할 경우 기 제정된 다른 유사조례의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조례의 개정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지의 여부와 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나
-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1조(목적), 제2조(위치), 제3조(기능), 제13조(운영위원회 구성), 제14조(위원회 기능), 제15조(위원회 회의), 제16조(수당 등) 7개 조항은
- 2007. 4. 26 기 제정된 「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의 목적과 기능, 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일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구성되어 있으므로
- 본 개정 조례안과 기 제정된 「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를
 - ① 통폐합하여 유사조례를 폐지하거나
 - ② 또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, 제13조 내지 제16조의 조문내용 일부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이 있으므로 삭제 및 수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